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피·소개(疏開)·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배포”를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복용지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는 특정지역·연령의 주민 및 기관, 배포 기준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행정구역명, 면적, 인구수)
2.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칭, 주소)
3.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수량
4.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사유

5. 사전 배포에 따른 설명·안내대상 인원수 및 설명·안내 일정 등 계획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명·안내는 사전 배포 전에 개별 또는 다수의 인원을 집합하여 실시하되, 질환 등에 따른 배포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명·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를 제출·제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민에 대한 사전 배포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주민인 경우: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신청서 제출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을 대리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기관인 경우: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신청서에 해당기관 개설·설립 등의 등록·허가·인가·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⑥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록·보관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⑦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별표 4 제1호의 제목 중 “대피·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배포”를 “대피, 소개 및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복용지시”로 하고, 같은 호 표 중 “갑상선방호약품배포”란을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복용지시”로 한다.

별표 6의2, 6의3, 6의4, 6의5 및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비축수량 기준

구 분	비축수량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 중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서 여유분 20퍼센트를 더한 값 이상의 수량 최소 비축수량 = 인구수 × 2회 복용 분량(1명당) × 1.2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가목에 따른 최소 비축수량의 50퍼센트 이상의 수량

2. 관리기준

- 가. 분실방지 및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이 훼손·변형·변질되지 않도록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에 적합한 환경에 보관할 것
- 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갑상샘 방호 약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할 것
- 라. 매 반기 1회 이상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현황을 점검할 것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 대상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

1. 사전 배포할 수 있는 지역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도서(島嶼)·산간오지(山間奧地) 등 방사선비상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적시 배포가 곤란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전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사전 배포할 수 있는 연령 등 대상주민

만 40세 미만인 주민 및 임부(妊婦), 모유 수유부(授乳婦)를 우선 사전 배포 대상으로 하되 해당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비축 수량, 사전 배포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주민에 대해서도 사전 배포할 수 있다.

3. 사전 배포할 수 있는 기관

가. 약국

나.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사전 배포 기준 수량

가. 주민 : 1명당 2회 복용 분량

나. 기관 : 해당 기관의 정원(定員), 수용·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의 장이 합의한 수량

기록·보관하여야 할 사항(제18조의2제6항 관련)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기록 1) 보관 시설 명칭 및 주소 2) 담당자 및 연락처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비축 수량 5) 해당 반기 폐기 수량,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폐기사유	매 반기 1회 및 비축 중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변동이 있을 때 마다	7년
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기록 1) 주민대상 사전 배포 기록 가) 사전 배포 행정구역 명칭 나) 사전 배포 인구수 다) 사전 배포 일자 라) 사전 배포 주민 인적사항 및 배포 정보 (1) 성명, 연령, 주소, 연락처 (2) 해당 인원의 갑상샘 방호 약품 수령 및 설명·안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3) 사전 배포 갑상샘 방호 약품의 수량, 제조일자, 유효기간 마) 약품 반납 주민 인적사항 및 반납 정보 (1) 성명, 주소, 연락처 (2) 반납약품 사전 배포 일자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반납수량 (5) 반납사유 2) 기관 대상 사전 배포 기록 가) 기관 명칭 및 주소 나) 해당 기관의 종류(학교, 약국 등)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 시	7년

다)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라) 사전 배포 일자 마) 해당 기관의 갑상샘 방호 약품 수령 및 설명·안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바) 사전 배포 갑상샘 방호 약품의 수량,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 약품 반납 기관정보 및 반납 정보 (1) 기관 명칭 및 주소 (2) 해당 기관의 종류(학교, 약국 등) (3)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4) 반납약품 사전 배포 일자 (5)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6) 반납 수량 (7) 반납 사유		
다.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기록 1) 비축·관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기록 가) 분실·훼손 일자 나) 보관 시설 명칭 및 주소 다) 분실·훼손 수량, 제조사, 제조일자 라) 분실·훼손 사유 2) 사전 배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기록 가) 분실·훼손 일자 나) 주민 또는 기관 구분 다) 해당 주민 또는 기관의 정보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칭) 및 주소) 라) 분실·훼손 사유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이 발생할 때 마다	7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보고사항, 보고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및 방법 ^{주)}
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현황 1) 보관 시설명 및 주소 2) 담당자 및 연락처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비축 수량 5) 갑상샘 방호 약품 폐기 기록 가) 폐기 일자 나) 당초 보관 시설명 및 주소 다) 수량, 제조사, 제조일자 라) 폐기 사유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현황 1) 주민대상 사전 배포 가) 사전 배포 주민수(행정동·리 단위로 구분) 나) 사전 배포 일자, 배포 수량 다)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2) 기관 대상 사전 배포 가) 사전 배포 기관 명칭 및 주소 나) 해당 기관의 종류(학교, 약국 등) 다)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라) 사전 배포 일자, 배포 수량 마)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다.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1) 비축·관리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기록 가) 분실·훼손 일자 나) 보관 시설명 및 주소 다) 수량, 제조사, 제조일자 라) 분실·훼손 사유	분실·훼손 인지 후 지체 없이

2) 사전 배포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분실·훼손 기록	
가) 분실·훼손 일자	
나) 주민 또는 기관 구분(기관인 경우 기관명칭 및 주소)	
다) 수량,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라) 분실·훼손 사유	

주) 가목, 나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구 보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한 보고사항을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갑상샘 방호약품의 분실·훼손 인지 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의2서식]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신청서(주민용)

신청인 (본인)	성명	성별	남, 여	연락처
	생년월일			※ 1명당 2회 복용 분량으로 한정합니다. 갑상샘 방호 약품 신청(총량) ()정
	주소			

대리수령 가족 정보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수령 동의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수령 동의 (서명 또는 인)

※ 본인 및 대리수령 가족(성명 기입)의 성명 옆 란에 아래 해당하는 항목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입해주시시오.

복용 불가 여부 확인	① 갑상샘 방호약품의 성분인 요오드에 과민반응(요오드 과민증)을 보이는 사람			
	② 갈락토오스 불내성, 유당 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③ 폐결핵 환자, 포진상 피부염 환자, 보체성 혈관염 환자, 심장질환을 동반한 갑상샘결절 질환자			
	신청인(본인)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상담 필요 여부 확인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상담 필요 여부 확인	① 갑상샘기능항진증	② 갑상샘기능저하증	③ 심장기능장애	④ 순환기계기능장애
	⑤ 신장기능장애	⑥ 저단백혈증	⑦ 선천성 근강직증	⑧ 고칼륨혈증
	⑨ 알칼리증	⑩ 소화성궤양	⑪ 갑상샘 관련질환	⑫ 칼륨함유제제 복용중
	⑬ 칼륨저류성 이뇨제 복용중	⑭ 리튬제제 복용중	⑮ 방사성요오드제제 복용중	⑯ 제산제 복용중
	신청인(본인)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성명	항목 번호 기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의2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또는 제시 서류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확인증 등) 제시. 다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청인과 수령대상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급적 생년월일만 표시하여 발급된 서류를 제출) 1부(본인 수량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

유 의 사 항

1. 상기 복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담필요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상담을 거쳐 배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신청서(기관용)

신청기관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해당 기관의 정원	수용 · 이용인원	갑상샘 방호 약품 신청(총량)
			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의2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기관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대상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첨부서류	1. 「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8.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배포 대상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대피·소개(疏開)·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배포</u>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 등) ① ----- ----- <u>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복용지시</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의2(<u>갑상샘 방호약품 비축·관리 등</u>)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약품의 비축·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는 특정지역·연령의 주민 및 기관, 배포 기준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

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행정구역명, 면적, 인구수)
2.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칭, 주소)
3.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수량
4. 사전 배포하고자 하는 이유
5. 사전 배포에 따른 설명·안내대상 인원수 및 설명·안내 일정 등 계획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명·안내는 사전 배포 전에 개별 또는 다수의 인원을 집합하여 실시하되, 질환 등에 따른 배포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명·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를 제출·제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민에 대한 사전 배포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주민인 경우: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 신청서 제출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을 대리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기관인 경우: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별표4 1. <u>대피 · 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u> <u>배포</u> 등의 결정기준 <table border="1"> <tr> <td>긴급 주민보호조치</td><td>결정기준</td></tr> <tr> <td>갑상선방호약품배포</td><td>-</td></tr> </table>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갑상선방호약품배포	-	<u>배포 신청서에 해당기관 개설</u> <u>· 설립 등의 등록 · 허가 · 인</u> <u>가 · 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u> <u>서류를 첨부하여 제출</u> ⑥ <u>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u> <u>해당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u> <u>· 구청장이 기록 · 보관하여야</u> <u>할 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u> ⑦ <u>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u> <u>해당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u> <u>· 구청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u> <u>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u> <u>기한 ·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u> <u>다.</u> 별표4 1. <u>대피, 소개 및 갑상샘 방호 약품</u> <u>배포 · 복용지시</u> -----. <table border="1"> <tr> <td>긴급 주민보호조치</td><td>결정기준</td></tr> <tr> <td>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 복용지시</td><td>-</td></tr> </table>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 복용지시	-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갑상선방호약품배포	-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 복용지시	-								